



# 환 · 경 · 관 · 련 · 질 · 의 · 응 · 답

## 토지수용으로 방치된 폐기물 처리 주체는?

Q

택지개발로 인하여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수용된 택지에서 조업하던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누가 처리하여야 합니까?

현재 수용토지의 소유자는 한국토지공사이고 수용된 사업자에게는 보상금 80% 정도만 지급된 상황입니다.

또한 현 사업장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가 폐기물을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은 기본적으로 해당 폐기물을 방치한 자에게 있으므로 토지 수용된 택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가 방치시킨 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부도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방치한 자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중 선별된 폐합성수지의 처리

Q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장에 반입된 건설폐기물중 페콘크리트, 페아스콘등과 폐합성수지가 혼합된 상태에서 사업장내에서 인력을 이용하여 분리선별한 후 선별된 폐합성수지를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A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 해당되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에 위탁처리하시면 됩니다.

## 수질공정시험방법 중 아연 분석

Q

이번에 제가 질문을 드릴 사항은 시약에 관한 것입니다.

폐수 실험 항목 가운데 아연분석을 UV로 측정할 시 시약으로 포수클로랄이 쓰입니다. 그런데 포수클로랄 시약이 마약류로 등급되어 더이상 시약을 구매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약 역시 사용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이렇게 되면 UV기기만 보유한 자가측정회사는 더이상 아연분석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A

시약구입의 불가능여부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나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도록 규정된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032-560-7358-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냉매 처리

Q

사용하던 기계에서 폐기물 처리 중 프레온가스계열인 R123냉매가 조금 발생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폐기물 적법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A

냉매에 유기용제가 함유되어 있을 경우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일반폐기물에 해당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 배출시설 신고여부

Q

기존에 대기 2종으로 신고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동일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시설이 추가되어 변경신고여부를 검토중인데요.

질의 1) 변경신고시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배출시설의 규모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전력사용량(HP)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질의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은 추가되는데 옥상에 굴뚝을 새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새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존 굴뚝중 하나에 유입하여 배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 3)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가동되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변경신고 대상인지요?

A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가 명확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허가 받은 배출구의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50%(특정대기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30%)이상 증설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때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거 당초 허가 받은 배출시설별 규모(※ 별표 3의 2에 명기된 배출시설 종류에 따라 용적, 연료사용량, 동력(HP) 등이 될 수 있으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 여러 개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1개의 굴뚝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에 따른 기존 굴뚝의 용량이 충분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배출구별로 자가측정 방법(횡수), 배출허용기준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관리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설치허가(또는 신고) 받은 배출시설을 폐쇄하고자 한다면 변경신고 대상이나, 폐쇄계획 없이 단순히 미가동상태라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가동계획은 있으나 장기간 미가동 상태라면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배출시설 가동중지신고 등을 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폐기물 중간처리 관련 책임유무

Q

현장내 폐기물을 반출시 적법한 처리절차(성상별 배출 등)에 의해 허가 된 중간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 해서 반출 했을경우,

질의 1) 위탁받은 중간처리업체에서 당 현장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 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책임은 배출자 인지 아니면 중간처리업체에 있는지 여부?

질의 2) 배출자가 폐기물 배출시 당 현장 폐기물에 대해 중간처리, 최종처리 상태까지 관리 및 자료 보관 등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 폐기물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은 처리업자에게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배출자도 수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배출자가 위탁한 폐기물의 처리과정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나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작성 대상인 경우에는 최종처리까지 확인하여야 하며 인계서 등의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매립폐기물이 발생될시 처리 근거

Q

불법매립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의 1) 불법매립폐기물이 발생될시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요?

질의 2) 불법매립폐기물의 주체가 정해지면 행정적인 조치를 받게 되는지요? 받게 된다면 근거 법령은 어디에 두는 지요?

A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Q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설치전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에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이나 비용문제로 인해 갑작스럽게 설치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질의 1) 이미 신고를 하였으므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는건지?

질의 2) 이미 신고는 하였지만 폐쇄로 인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건지(가동개시신고전)?

질의 3) 아니면 이미 설치신고한 내용(아직설치완료전) 모두 취하한다는 취하서를 제출해야 하는건지?

상기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

대기배출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 신고 대상이며, 폐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전기 및 배관 등을 철거하는 등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객관적으로 배출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㉔

월간 '환경기술인' 홈페이지

[www.keef.or.kr](http://www.keef.or.kr)